



- 화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-

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전 안내문

평소 화재예방과 재난안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경기도에서는 화재시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(화재안전조사)에 따라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·유지 관리 여부, 화재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‘화재안전조사’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귀 대상에 화재안전조사팀 방문 시 조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◇ 화재안전조사 안내 ◇

□ 착안사항

- (조사일정) 사전 협의(오전 / 오후)
- (사전준비) - 해당부분
 - 소방계획서, 자체점검보고서, 자격수첩, 완비증명서, 위험물허가서류 등
 - 건축물 관련 서류, 이용자 특성 및 주변 여건 사전 파악 등

□ 조사내용(건축물 안전관리)

- (건축물개요) 연면적, 층별현황, 건축물구조 등
- (소방 분야) 소방시설, 안전관리자 업무수행, 자체안전관리, 무허가위험물 등
- (건축 분야) 방화구획, 피난시설 관리상태, 불법건축물, 마감재 등

고양소방서에서는 언제나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,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

2024. 10. 21.

고양소방서장

